

● 제32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2. 21.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 I. 건의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이소라 의원 외 31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23. 10. 16.
- 다. 회부일 : 2023. 10. 23.
- 라. 의안번호 : 1399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며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 왔음.
- 작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에는 충분하지 않은 현실임.
- 이에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증가하는 자치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 1명당 최소 1명 이상의 정책지원관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정책지원관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증가와 예산 심사 규모의 확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태임.
- 이에 정책지원관의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이 송 처 : 국회, 행정안전부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 1 건의안의 개요 및 취지

-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 2 건의안의 타당성 검토

-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후 약 30여년 간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이에 2021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도입 근거<sup>1)</sup>가 마련되었음.
-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sup>2)</sup>하고 있음.
- 서울시의회 또한 의원 정수 112명의 2분의 1인 56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운영 중임<sup>3)</sup>.

1)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3) 정원은 56명이나 1명이 해임처분(2023.11.10.)을 받아 현원은 55명임.

- 해당 정책지원관의 직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행정사무감사, 회의규칙 등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임4).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의 의결사항과 행정사무감사 >**

<p><b>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b>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li> <li>2. 예산의 심의·확정</li> <li>3. 결산의 승인</li> <li>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li> <li>5. 기금의 설치·운용</li> <li>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li> <li>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li> <li>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li> <li>9. 청원의 수리와 처리</li> <li>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li> <li>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li> </ol>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b>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b>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

-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 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현행 지방의회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인력 지원 제도는 의정활동에 대한 적기 지원이 불가해 업무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지속성이 저하되고, 의원면직자·휴직자 등이 수시 발생하면서 제도 운영에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입법, 예산심의, 감사, 민원 업무 등 국회의원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인턴을 포함해 보좌 인력 9명을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해서 매우 불합리한 상황임.
-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와 관련 조례, 의결 사항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방의회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감시·건제가 어려운 실정임.
- 서울시 예산규모는 2019년 35조 7,416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2023년 47조 1,90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서울시의회의 각종 의안 처리 현황도 제7대 의회 1,373건에서 제10대 3,33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서울시 예산 및 의회 의안 처리 현황>**

(단위 : 억원, 건)

연도/ 의회 대수	예산	의안
2023/제11대(22.7.1~23.12.13.)	47조 1,905	1,068
2022/제10대	44조 2,190	3,332
2021/제9대	40조 1,562	2,630
2020/제8대	39조 5,359	1,931
2019/제7대	35조 7,416	1,373

※ 서울재정포털, 한눈에 보는 서울 예산 편집(본예산 기준)자료,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정보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 등은 1의원 1보좌관제 도입을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sup>5)</sup> 한 바 있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관련된 법안과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총 7건이 계류 중임.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관련 국회 계류 법안 현황>**

의 안 명 (의안번호)	발 의 자 (발의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 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483)	임종성의원 대표발의 (2022.7.15)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행정안 전위원 회 계류 중
" (2119383)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2023.1.10)	-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정수 이상으로, 기초의회는 현행대로 의원 정수 내 운영 -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 (2120131)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2023.2.21)	-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인력 운영 - 지방의회별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최고, 최저에 따른 차액을 국비로 보조 -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	
지방의회법안 (2105424)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020.11.17)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2022.10.20.)

" (2112100)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021.8.18)	"	
" (2114151)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021.12.29)	"	
" (2124569)	박성민의원 (2023.9.20.)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두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	

-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을 통해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입법 및 예산심의 과정을 내실화하고,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임.
-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 재정 요소 발생으로 부정적 여론 우려와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등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와 지휘 체계, 업무성과 평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3 종합 의견

-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정책지원관의 임용이 가능해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임.



- 지방행정이 지속적으로 전문화·복잡화되면서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현재 의원 정수 대비 부족한 정책지원관  
제도 운용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난바, 정책지원관 확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의 취지는 타당함.

담당 연락처	02-2180-7688
--------	--------------